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 산 립 청



수신 한국공업포장협회(김형빈이사)

(경유)

제목 목재생산업 등록 대상업종에 대한 질의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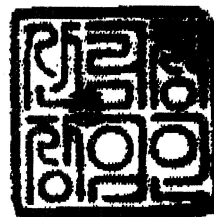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에서 질의하신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에 정하고 있습니다.

3. 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기준을 보면 제재업 제1종에 대한 사업범위를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귀 협회에서 질의하신 목상자 포장업체는 제재목 또는 단판을 구입하여 상자를 제작하여 수출품의 해외 운송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방습, 방청, 완충 등의 포장기법을 사용하여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제재목이나 단판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므로 목재생산업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목재생산업 등록취소는 등록업체에서 직접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 립 청



주무관

김일숙

주무관

장석규

임업사무관

이준산

목재생산과장

2014. 3. 3.  
남송희

협조자

시행 목재생산과-1495

(2014. 3. 3.)

접수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1동 1704호

/ <http://www.forest.go.kr>

전화번호 042-481-4291

팩스번호 042-471-1446

/ [kooma@forest.go.kr](mailto:kooma@forest.go.kr)

/ 대국민 공개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정부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